

- ▶ 2025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▶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,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호(지)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?

홈페이지(www.mpva.go.kr)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🔍 검색창에 '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'를 검색해보세요.

※국가보훈부 '나만의 예우'에서는 나의 민원행정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지원내용 등도 확인할수 있습니다.(로그인 필요)



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

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: ☎ 02-2225-2550

- 부산 : ☎ 051-601-6762~3
- 대전 : ☎ 042-605-0732~3
- 대구 : ☎ 053-630-7127~8
- 광주 : ☎ 062-602-6615~6
- 인천 : ☎ 032-363-9893~4

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(보훈보상대상, 지원대상 포함)에게 무료로 민·가사, 형사, 행정소송 지원

▶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번으로 문의

1: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 **1577-0606**

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화번호는? 02-794-9800

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'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', '보훈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', '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'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'모두의 보훈 드림' 누리집 개통

(www.donate.bohun.or.kr)

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.

- | | | | |
|---|---|--|---|
| 생활안정
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, 교육, 긴급구호 등 생활기반을 지원합니다. | 예우사업
국가유공자 등의 헌신·희생에 감사 예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. | 노후지원
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. | 재활치료
전쟁, 사고, 가족을 잃은 충격 등의 심리치료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. |
|---|---|--|---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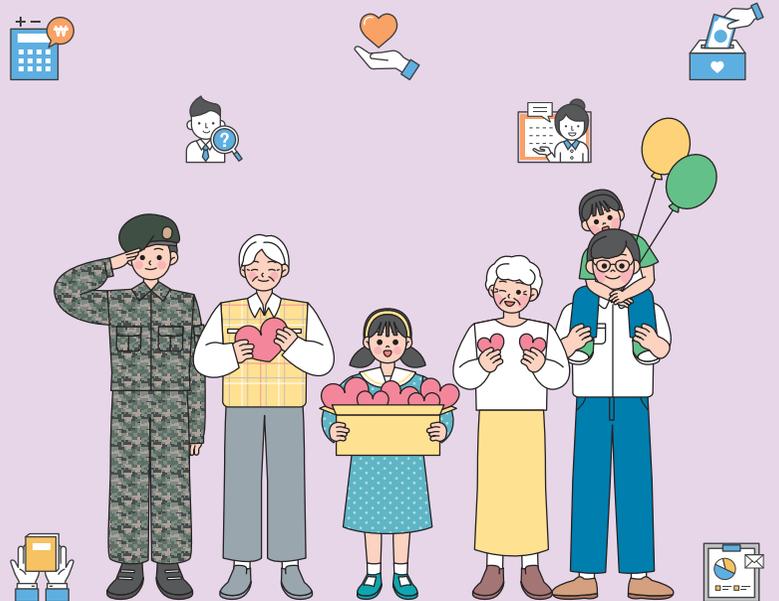
「모두의 보훈 드림」 홈페이지 QR코드
QR코드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, **모두의 보훈**



2025 보훈가족을 위한

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보훈제도



국가보훈부

- 
보훈급여금 03
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- 
교육지원 04
 수업료, 학습보조비,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
취업지원 06
 가정 부여,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
- 
차량지원 08
 보철용 차량관련 세금면제, 통행료감면, LPG차량 등을 지원합니다.
- 
의료지원 10
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.
- 
복지지원 12
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,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- 
기타지원 14
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.
- 
사망시 예우 16
 사망시 호국원 안장 또는 장제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해 드립니다.

▶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▶ **고엽제 수당 월 지급액은? (2025년도)** (단위 : 원)

	고도	중등도	경도
후유의증 수당	1,234,000	909,000	596,000
후유증 2세 환자 수당	2,198,000	1,707,000	1,371,000

-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공공자(전·공상군경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수당·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합니다.
-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란?
 -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녀로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
 -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은?
 -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
▶ **고엽제 수당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는데...**

-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, '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-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
-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'호국보훈지킴이 통장' 시행('16. 6. 23)
 - (발급가능 금융기관) 10개 은행(우체국, 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KDB산업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신한은행, 대구은행)에 국가보훈등록증(국가보훈부 발급)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
 - 단,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

▶ **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**

- 신청대상은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분 중 생활이 곤란한 분
 - 지급대상 : 생활수준조사(소득·재산) 결과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인 경우
 - 지원금액 : 월 10만원

꼭!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.

- 본인·배우자·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사망 또는 국적 상실, 국적 회복
 - 본인의 결혼·재혼(배우자 포함)·이혼·자녀출생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·소멸된 때
 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
 -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주소 변경, 영주권 취득
 -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가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

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
- ▶ '12. 7. 1.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(94. 1. 1. 이후 출생자)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
- ▶ 국민기초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

▶ 자녀가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

-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.
 -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
- 가족 추가, 학교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 받아 입학(전학)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발급
 - 재학 중 신규로 고엽제 질환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 동일
-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 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 - 지급시기 : 4월15일,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
 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.

▶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부대학 미실시)
 - 가까운 보훈청에서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 -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- 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발급
 - 재학 중 신규로 고엽제 질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 동일
- 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 - 일반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
2년제 대학	3년제 대학	4년제 대학	5년제 대학	6년제 대학
4학기	6학기	8학기	10학기	12학기
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

구 분	2년제	3년제	4년제
면제학점	84학점 이하	126학점 이하	168학점 이하

※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, 성적 등의 제한없음
(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)

-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.
 - 학습보조비는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, 연간 236,000원을 2회(4월 15일, 10월 15일)에 나누어 지급
 - ※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(보훈관서 문의)

▶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

-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
-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
 -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(4월 15일, 10월 15일) 지급
 - 연간 지급액 : 유치원 초등학교 534,000원 / 중·고등학교 718,000원
 - ※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.

▶ 장학금은 없나요?

-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,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기 :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
- 신청 장소 : 재학 중인 학교를 관리하는 보훈청
- 신청 자격
 - 대학원 장학 : 대학원 석·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본인으로 직전학기 평균 85점 이상
 - ※ 지원제외 : 정규 첫학기, 해외유학·원격대학원생,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, 동등과정 수혜자
 - 특수 장학 :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
- 제출 서류
 - 대학원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, 재학증명서 1통, 성적증명서 1통,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
 - 특수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
- 지급금액
 - 대학원 장학 : 최고 1,150,000원
 - 특수 장학 : 300,000원

▶ 장애등급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.

- ▶ '12. 7. 1. 이후 신규 등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, 취업알선도 횟수도 1인 3회로 제한(가점지원 제한 없음)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한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

▶ 채용시험 시 가산점(10% 또는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

-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읍·면·동주민 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실에서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
 - 기업체,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: 원서접수시 첨부
 -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: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, 합격자 발표 후 제출 (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)
- 가 점 :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10%, 유가족 5%

▶ 취업이 어려우시다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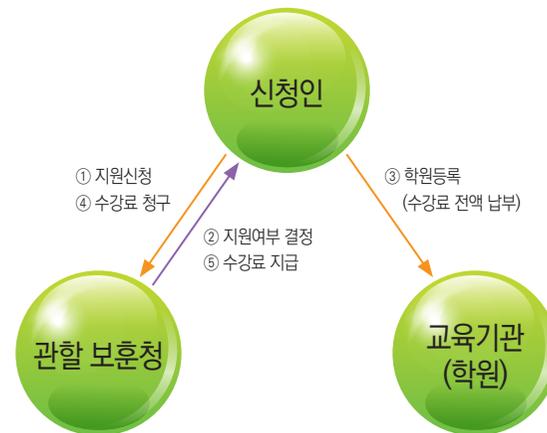
- 이력서(사진 부착) 및 자기소개서 1통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
-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으로 신청 가능
 -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,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
 - ※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
 - 운전직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

▶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

-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, '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'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공직업훈련기관 : 기능대학,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, 직업전문학교 등
-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,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.
 -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
 - ※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(주20시간)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

▶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

-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에서 취업수강료 (지원과정(목) 및 지정교육기관) 확인 후,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, 관할 보훈청에 '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사전동의서, 서약서, 영수증'을 먼저 제출하세요. (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)
 -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⇒ 관할 보훈청
 - ※ 타부처(자치단체 포함) 중복지원 불가
 - 학습 진도율 80% 이상(수강기간 2/3 이상)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(구비서류 : 수강완료 사실확인서, 응시확인서류)
 -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(70%) 입금
 - 1인당 지원한도액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,000,000원 (연간 1,500,000원)
 - 유가족 총 1,500,000원 (연간 750,000원)
- ※ 단, 법정취업자,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
 ※ 수강료 외 시험응시(수수)료, 검정(수수)료, 교재비는 미지원



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

-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, 워크넷 정보, 취업수강료 지원,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☎ 사이트 주소 : <https://job.mpva.go.kr>

▶ 차량지원은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
▶ 각각의 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 불가

▶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?(등급판정자에 한함)

○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,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. 지방세(취득세, 자동차세), 개별소비세(승용자동차), 환경개선부담금(경유 차량),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.

- 지방세 면제요건
-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, 7~10인승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
-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
-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, 7인승 이상 승용차, 소형 승합차, 소형 화물차, 소형 특수차 중 1대

유의사항

- 지방세(취득세) :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- 개별소비세 :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에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※ 배기량 제한없음 / 면제금액 500만원 한도
- 지역개발사업지방채(배기량 제한 없음) :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름

▶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?(지역에 따라 다름)

○ 자동차표지는 일반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, 가까운 보훈(지)청에서 자동차등록사항을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
- 일반표지 발급대상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)
- 고엽제후유증대상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
- 일반표지 발급대상이면서, 아래 질환으로 중등도, 고도 등급판정을 받은 분 (경도 판정자, 등급미달자 제외)
- ※ 표지발급 해당 질환 : 중추신경장애, 뇌경색증, 다발성신경마비, 다발성경화증, 근위축성 신경축색 경화증, 근질현, 뇌출혈, 무혈성괴사증, 고혈압

○ 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: 50~80%(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다름)
-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승차 시에 한하며, 자동차표지 부착 및 고엽제 등급이 표시된 확인원(가까운 보훈청에서 발행) 제시 필요

- ※ 보철용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꼭 신고해 주시고,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.
- *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(☎ 1544-7000)에 해지신청 해주세요.
- ※ 보철용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비영업용 보철용차량 및 사업용 개인택시(보철용차량 등록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)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(정기·종합) 수수료가 80% 할인됩니다.

▶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유료도로 통행료가 할인(50%)됩니다.(등급 미달자 포함)
 - 감면차량 : 배기량 2,000cc이하 승용차, 6~10인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, 전기·수소차 중 1대
 -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
- ▶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(1688-3017) 및 엠피온(1544-8202)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
-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.
 -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세금인상분 지원(세금 인상, 인하에 따른 변동 있음)
 - ※ 50ℓ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: 사업장·직장·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(1일기준)
 -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
- 친환경차량(전기·수소차)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.
 - 충전비 : 월 29,000원 한도 내 (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)
 - 구매보조금 : 2022년 1월 1일 이후,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
 - ※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,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-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.
 - 지원대상 : 고도·중등도 등급판정자

▶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...

- 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(3.5×4.5cm)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.(30일 정도 소요)
 - 신용카드 기능(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) / 직불카드 기능(신한은행, 우체국계좌 만 가능)

LPG·전기·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

-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안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
- ※ 본인만 사용해야 함
- ※ 유공자 사망, 세대분리, 해외체류, 차량매각,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

▶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

-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(단, 치아보철, 성형 등은 제외)
 - 국비 진료대상 :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(※ 등급미달자는 인정질병만 국비 진료)
 - ※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된 경도환자의 경우, 인정질병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%를 본인이 부담
-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
 - 중앙보훈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14)
 - 부산보훈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6000)
 - 광주보훈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2-6114)
 - 대구보훈병원 :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(☎ 053-630-7000)
 - 대전보훈병원 :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(☎ 042-939-0114)
 - 인천보훈병원 :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(☎ 032-363-9800)
 - 보훈공단 서울요양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23)
 - 보훈공단 광주요양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4-5600)
 - ※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해당 질병으로 수술 시 보조기 지급

▶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?

-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등급 미달자는 인정질병만 무료 진료
-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의료지원 >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후,
-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 - 지원 범위 :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(초음파 검사, MRI, 권위소화제)

▶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...

-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,
- 반드시,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.
 - ※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
-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
 - 제출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응급실 기록지, 진단서 등
-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.

▶ 전투 또는 공무 중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

-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
 -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함
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·등록된 사람이 인정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 *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안내·접수
-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 지급
 - 철 크리치, 목발, 지팡이는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보장구 센터 방문시 지급
 - 팔보조기, 다리보조기, 척추보조기는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



▶ 집에서 돌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

- 관할 보건청에 '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(등급 판정자에 한함)
 -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일정 생활수준 이하인 분
 - ※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노후복지서비스 특별지원
-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조사
-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재가보훈실무관이 주1~2회(회당 2시간)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,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

▶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

- 관할 보건청에 '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에 한하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~5등급 받고 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 제4항에 의하여 저소득층·생계곤란 경감대상자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
 - ※ 기타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받아,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 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본인부담액의 60% 지원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 제외

▶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

-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.
 - ※ 수원보훈요양원 ☎ 031-240-9000, 광주보훈요양원 ☎ 062-602-5800
 - 김해보훈요양원 ☎ 055-340-8585, 대구보훈요양원 ☎ 053-606-3000
 - 대전보훈요양원 ☎ 042-829-3000, 남양주보훈요양원 ☎ 031-579-7000
 - 원주보훈요양원 ☎ 033-769-2000, 전주보훈요양원 ☎ 063-220-0777
 - 신청대상 :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(등급 판정자에 한함)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 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"시설급여"에 해당하는 분
 - ※ 주간보호는 "재가급여" 해당자도 가능

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, 동거자일 경우는 1부)
 -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,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의 60% 감면
 - 감면대상 :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

- 신청대상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(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)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입증 서류 필요
-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
- 입소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.
 - ※ 보훈원 ☎ 031-250-1521



▶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

- 시설이용시 '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' 또는 '국가보훈등록증'을 제시하시면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 - 100% 감면시설 : 고궁 및 능원, 국·공립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·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수목원, 국·공립휴양림
 - 50% 할인시설 :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국·공립 공공체육시설
- 국내선 항공기 30% 할인 :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

▶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

- ▶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,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기타지원 >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

협약콘도(명)	내용	예약문의
보훈휴양원	충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	☎ 043-854-2121 또는 http://condo.bohun.or.kr
소노호텔&리조트(前 대명)	15개 지역(때밀리 및 스위트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주말, 연휴, 성수기(예약 제외)) *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	전화(☎ 1588-4888)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sonohotelsresorts.com * 이용권 번호 콜센터 : 52099159 * 객실 +朝食 : 52099129
한화리조트	12개 지역(20평형대 디럭스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(잔여 객실에 한함) *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	홈페이지 예약 www.hanwharesort.co.kr * 고객센터 : 11806536
일성리조트	7개 지역(19~40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제주비치는 금·일 주말요금 적용 * 금, 토,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, 별도 요금 적용 *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	전화예약(☎ 1566-8113) 또는 예약사이트 www.ilsungresort.co.kr * 법인번호 : 62239063
호반호텔앤리조트	3개 지역 * 연중(주말, 연휴 제외 /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아일랜드리조트(안면도, 포레스트리조트(제천), 레스트리조트(제천) 주말, 연휴 예약불가 *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	홈페이지 예약(www.resom.co.kr) * 리솜 홈페이지(resom.co.kr)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> 회원정보에서 "MOU" 선택 > 업체 "국가보훈부" 선택 후 인증번호(1400) 입력 > 회원가입 완료 후 "패키지 예약" 진행
청풍리조트	충북 제천 소재(7.9평형 스탠다드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* 성수기,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,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(☎ 043-640-7000)
주문진리조트	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(10~19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성수기,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(☎ 033-661-7400)

* 예약번호,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

▶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

-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'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' 또는 '국가보훈등록증'을 제시하시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
- 무료발급 항목
 -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
 -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/ 가족관계증명서,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
 -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/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

▶ 세금공제 혜택 - 고엽제후유증

구분	감면 내용	감면방법
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	·연말 소득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	국가보훈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전송 (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필요)
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	·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('25.12.31.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	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
상속세, 증여세	·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·증여받은 재산(신탁재산)의 과세가액 불산입(5억원 한도)	

※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본인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하여야 함.

▶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.(월남전 참전자에 한함)

-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
 -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'재난관리업무포털'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'재해발생신고서',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 (소방서, 경찰서 또는 시·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지급 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

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분만 아래와 같이 신청하십시오

▶ 먼저,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연락주세요

- 국가유공자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, 대통령령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드리고,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 -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

▶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

-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 대상자)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
- 지원내용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
 - ※ 계약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(장례지도사, 수의, 상복, 관, 장의 차량 등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상과에 반드시 '장례기간' 중 유족이 신청

▶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(<https://www.ncms.go.kr>)에 신청하세요



1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



2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



3 묘지선택 후 신청

○ 신청 후 기다리시면,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-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족 희망일자에 안장이 실시됩니다. 다만, 범죄 경력 및 병역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

- ※ 참고 : 2025년 국립이천호국원 확충
 - '17.4월부터 안-이장 중지, '25년 봉안당 확충으로 재개원 예정
 - '24.10월부터 안-이장 사전심사 및 공실안장 실시 (자세한 문의 : 031-645-2331~4)

▶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...

- 안장식 일정은 호국원 현종과와 협의하여 정하시고,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·화장 하신 후, 국립묘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.
 - ※ 화장장 감면 유·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

▶ 배우자를 합장하려면...

-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,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• 국립호국원 소재지

- 국립영천호국원 :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 (T. 054-330-0850)
- 국립임실호국원 :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(T. 063-640-6081)
- 국립이천호국원 : 경기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(T. 031-645-2345)
- 국립산청호국원 :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 (T. 055-970-0770)
- 국립괴산호국원 : 충북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(T. 043-830-1177)
- 국립제주호국원 : 제주 제주시 1100로 2558-73 (T. 064-730-8470)

▶ 시설묘지에 안장했는데 장제보조비는 없나요?

-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시면, 유족께서 관할 보훈청에 '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신분증
 - 보훈청에서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
 - 심사내용 :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후 5년 미경과 여부, 가족관계 등
 - 제출하신 통장으로 장제보조비 20만원을 입금합니다.
- ▶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(호국원),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경비의 50%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

등급 미달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무료 진료
- 자동차표지 발급,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또한,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은 참전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가 적용됩니다.

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서울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강동구, 송파구,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	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(02)3785-0815
서울남부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	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(02)3019-2300
서울북부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종로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	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(02)944-9260
경기남부지방보훈청	수원, 안양, 과천, 안산, 평택, 오산, 의왕, 군포, 시흥, 화성	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(031)259-1801
인천보훈지청	인천광역시, 부천, 광명, 김포	인천 미추홀구 석성로 239 (032)588-4100
경기북부지방보훈청	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파주, 포천, 양주, 연천, 가평, 양평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(031)843-5748
경기동부지방보훈청	성남, 하남, 광주, 용인, 안성, 이천, 여주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, 대경빌딩 3층(연남동) (031)289-2302
강원서부지방보훈청	춘천, 원주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, 횡성	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(033)258-3609
강원동부지방보훈청	강릉, 속초, 동해, 태백, 삼척, 고성, 양양, 정선, 평창, 영월	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(033)610-0606
대전지방보훈청	대전광역시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(042)280-1114
충남서부지방보훈청	보령,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예산, 청양, 서천	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(041)630-3700
충남동부지방보훈청	세종특별자치시, 천안, 아산, 공주	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(041)589-4900
충북남부지방보훈청	청주, 진천, 보은, 영동, 옥천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(043)285-3213
충북북부지방보훈청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괴산, 증평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(043)841-8800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대구지방보훈청	대구광역시, 상주, 김천, 구미, 경산, 성주, 칠곡, 고령, 군위, 청도	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(053)230-6010
경북북부지방보훈청	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, 예천	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(054)650-1400
경북남부지방보훈청	경주, 포항, 영천, 영덕, 울진, 울릉	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(054)778-2600
부산지방보훈청	부산광역시	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(051)469-8991
울산보훈지청	울산광역시, 양산	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(052)228-6500
경남동부지방보훈청	김해, 창원, 밀양, 거제, 창녕, 의령, 함안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(055)981-5600
경남서부지방보훈청	진주, 사천, 통영, 남해, 하동, 고성, 함양, 거창, 합천, 산청	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-5 (055)752-3881
광주지방보훈청	광주광역시, 나주, 담양, 장성, 화순, 강진, 장흥, 해남, 완도	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(062)975-6500
전남동부지방보훈청	순천, 여수, 광양, 곡성, 구례, 보성, 고흥	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(061)720-3200
전남서부지방보훈청	목포, 무안, 영광, 진도, 함평, 신안, 영암	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(061)273-0093
전북동부지방보훈청	전주, 남원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무주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(063)239-4500
전북서부지방보훈청	익산, 군산, 정읍, 김제, 부안, 고창	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-5 (063)850-3702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	제주특별자치도	제주 청사로 59, 3층 (064)710-8411